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2015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영 제24조 제1호”를 “영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육교직원의 교육 및 연수비
2. 체육대회,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
3. 보육아동 급·간식비
4. 어린이집 냉·난방비
5.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6.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비용
7.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
8. 숲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9. 그 밖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5조제2항 후단의 신설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보육정책위원회</p> <p>제5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후단 신설></p> <p>1.~4. (생략) ③·④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p> <p>제22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① (생략)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없다.</p> <p>③·④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비 용</p> <p>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1. <u>구립어린이집의 설치, 증축비·개축비 및 개수비·보수비</u> 2. <u>보육교사 인건비</u> 3. <u>어린이집 비품비 및 교재비·교구비</u> 4. <u>보육교직원의 교육 및 연수비</u></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보육정책위원회</p> <p>제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이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1.~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p> <p>제22조(위탁의 취소 및 해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p> <p>②·③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비 용</p> <p>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영 제24조제1항----- -----.</p> <p>1. <u>보육교직원의 교육 및 연수비</u> 2. <u>체육대회,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u> 3. <u>보육아동 급·간식비</u> 4. <u>어린이집 냉·난방비</u></p>

현행	개정안
<p>5. <u>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u></p> <p>6. <u>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u></p> <p>7. <u>체육대회,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u></p> <p>8. <u>보육아동 급식비</u></p> <p>9. <u>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운영비</u></p> <p>10. <u>기타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u></p>	<p>5. <u>어린이집 차액보육료</u></p> <p>6. <u>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비용</u></p> <p>7. <u>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u></p> <p>8. <u>숲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u></p> <p>9. <u>그 밖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u></p>